

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자치단체간 유사·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「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19567호)이 2006. 06.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
- 동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
-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삭제, 추가 및 신설로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관련 내용 자구 삭제(안 제1조, 제5조)
-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관련 자구 수정(안 제3조)
-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경감 규정 신설(안 제6조제3항)
-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삭제, 신설, 일부요율 전국통일 및 수수료 현실화(안 별표1)

□ 별표1. 제증명 수수료 요율 개정

<증 명>

-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삭제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신설 ⇒ 1필지당 1,000원
(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,500원)
- 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: 300원 ⇒ 800원 전국통일
- 지방세 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 발급 : 300원 ⇒ 800원 전국통일
- 회계에 관한증명 :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삭제
- 개별(공동)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: 300원 ⇒ 800원 전국통일
-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: 300원 ⇒ 800원 전국통일
- 토지(임야)대장등본에 개별공시 삭제

<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,지정,확인 등>

-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현실화 : 500원 ⇒ 20,000원
- 내수면 어업관계
 -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신설 : 1,000원
- 「공연법」 등에 의한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 신설 : 20,000원
- 「의료법」 등에 의한 보건소 관련 수수료 신설
 - 의료기관 개설 신고 : 20,000원
 -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: 10,000원
 -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: 20,000원
 -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: 10,000원
 -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: 20,000원
 - 안경업소 양도.양수 신고 : 10,000원
 -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: 20,000원
 - 치과기공소 양도.양수 신고 : 10,000원

-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·허가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으로 타 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(법령상 의무사항 제외) 수수료 현실화 : 300원 ⇒ 500원

4.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 교부세팀-1408(2006.7.3)호 및 도재정과 12563(2006. 7. 4)호의 표준안
- 행정자치부 교부세팀-1606(2005.10.12)입찰참가수수료 징수관련 감사원처분 요구 사항
-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3항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- 「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」
-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- 「내수면 어업법」 제23조
- 「영화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2조2, 제22조의3, 제26조
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, 제13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19567호)이 2006. 06.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유사·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조항 삭제, 추가 및 신설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임

- 주요 개정내용은 입찰참가수수료 자구를 삭제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자구는 수정하였으며
-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50%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삭제, 신설, 일부요율 전국 통일 및 수수료를 현실화 시킴.
 -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에 수수료를 명시하였으므로 제증명 수수료 관련 부분 삭제
 - 수수료 요율 전국통일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신설
 - 전산화로 토지(임야)대장등본에 개별 공시지가가 기재됨으로 토지(임야)대장등본에 개별공시 수수료 삭제
 -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신고등 8개부문 신고수수료 신설 등